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21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이용우·강민정·김성주

김승원 · 김한규 · 윤영덕

이수진 · 정필모 · 홍정민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 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5년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면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및 제7조제 1항).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거래정보등의 보존)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보존방법, 보존기간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3을"을 "제4조의3·제4조의5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정보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이 보존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4조의5(거래정보등의 보존) ① |
| |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을 15 |
|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
| | 보존방법, 보존기간의 계산방법 |
| |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
| | 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 | 제7조(과태료) ① |
| 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 | |
| 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 • <u>제4조의3을</u> 위반한 금융 | <u>제</u> 4조의3·제4조의5를 |
| 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 |
|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부과한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